

2. 建築法施行規則中改正(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 公告 第1995-359號 1995. 11. 30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및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건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1층 평면이 표시된 배치도와 입면도등 기본설계도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각층 평면도·단면도·구조도 등 세부설계도서는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함.

나. 가스·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 등은 토지굴착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하매설물의 소관·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다. 종전에는 건축물을 철거·멸실하는 경우 건축주가 철거·멸실신고를 하고 추가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주의 철거·멸실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등이 이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라. 16층 이상의 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계산을 건축구조기술사 이외에도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가 할 수 있도록 정함.

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500-4131, 참조: 주택도시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공기보다 품질생각 이익보다 기술생각